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0. 9. 14.

사회건설위원회

1. 審査經過

가. 제출일자 : 2010년 8월 19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0년 9월 1일

라. 상정일자 : 제155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회의(2010년 9월 7일)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 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설치(안 제3조)
-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을 위하여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 이남식)

- 본 조례안은 사회적서비스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2007.7.1. 시행)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실정에 맞게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사회적기업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사회적기업을 위한 시설비 등 재정지원·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사회적기업의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과 판로개척·조세감면 등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 안 제16조부터 제18조에서는 사회적기업과 관련하여 우리구 관내 민간기업·단체 등의 참여기업 확대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의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審査結課 : 原案 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7 호
----------	-------

제출연월일 : 2010. 8.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설치 (안 제3조)
- 나.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9조)
- 다.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을 위하여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부터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사회적기업육성법 제3조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 2)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2011년 예산편성 예정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10. 5.13. ~ 6. 2. 20일간)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사무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서울형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가능한 조직 중 서울시에서 법 제8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 요건을 완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4.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5.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6.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및 서울형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업무관련 공무원
2.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 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정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 가능한 기업 중에서 법 제8조 및 영 제9조의 요건을 완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육성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경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지원업무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시설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양여 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실적 보고, 지원의 취소 및 환수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와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을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구세감면)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구청장은 영등포구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영등포구 관내 민간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17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영등포구 관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영등포구 관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